

대한공증인협회 제·개정 회규

I. 제정 회규

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침

2023. 4. 18. 제정 (시행일 2023. 4. 18.)

① 제정 이유

회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에 대한 협회 차원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 지급 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② 제정 규칙 전문

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침

지침 제6호
2023. 4. 18. 제정
(시행일 2023. 4. 1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제6조의 회원을 말한다.

제3조(축의) 회원에게 경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축의금 등을 지급한다.

제4조(부의) 회원에게 상사(喪事)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의금 등을 지급한다.

부 칙 (2023. 4. 18.)

이 지침은 2023. 4. 18.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축의

1. 회원 자녀의 혼인 금 100,000원 또는 100,000원 상당의 축하 화환

(별표 2) 부의

1. 회원의 사망 금 500,000원과 100,000원 상당의 조화
2. 회원의 부모(회원의 배우자 부모 포함)의 사망
1. 회원의 사망 금 100,000원 또는 100,000원 상당의 조화

II. 개정 회규

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

2023. 3. 25. 일부개정 (시행일 법무부인가 2023. 4. 11.)

❶ 개정(변경) 이유 [일부 개정]

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나, 상임이사와 이사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협회장 및 부협회장, 감사와는 달리 협회장 당선자가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 받는 만큼 해임 결의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, 선거에서 당선된 협회장 당선자가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이사의 경우는 총회가 이사회에 그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 이후 최초 개최되는 이사회가 상임이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고자 함.

2 개정(변경) 내용

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”를 “임원 중 협회장, 부협회장,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‘(선출)’을 ‘(선임)’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다만, 총회는 협회장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상임이사에 대한 선임을 당해 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그 승인을 위임할 수 있고, 이 경우 당선자는 협회장에 취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 상임이사를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 (신설)

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3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3조(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 7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</p> <p>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구성원 7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</p> <p>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 개정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| <p>제13조(정족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임원 중 협회장, 부협회장,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.....</p> |
| <p>제27조(선출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협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</p> | <p>제27조(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전 25일부터 3일간 부협회장으로 입후보 하려는 자와 함께 연서하여 총회에 후보등록하여야 한다. 단, 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당해 부협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실효되며, 부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그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협회장 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부협회장 입후보자를 추가로 등록신청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.</p> <p>④ 협회장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며, 감사 입후보자 2명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⑤ 협회장 후보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최고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⑥ 상임이사와 이사는 협회장 당선자가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받아 선임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⑦ 감사 후보자가 없을 경우 협회장이 선임 직전까지 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.</p> <p>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⑩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다만, 총회는 협회장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상임이사에 대한 선임을 당해 총회 이후 최초 개최되는 이사회에 그 승인을 위임할 수 있고, 이 경우 당선자는 협회장에 취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 상임이사를 보고해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|